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12 _ 2013년 7월

이 사람의 향기 |

구종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포커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이대로 문제 없는가?

이슈분석 |

갈길 먼 장애인 고용정책

시민사회운동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위험한 초대

..... 지난 4월 2일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과 차량사이의 단차간
 격이 넓어 다리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18일에도 대방역에서 같은 이유로 휠체어를 탄 장
 애인의 휠체어가 빠진 바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이기에 해당기관의 미온적 대처가 야속하기만
 하다. 오늘도 누군가는 죽음의 문턱을 간신히 넘는다.

CONTENTS

02	장애와 이미지	위험한 초대
04	편집자 편지	“장애인정보모니터링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05	칼럼	안락사 논란, 그 불편한 진실과 또 하나의 시선
09	이 사람의 향기	구종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8	이달의 우수 의정사례	여성장애인 통합보호시설 확충 시급
20	포커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이대로 문제 없는가?
24	Photo	우리들의 발자취
25	이슈분석 1	갈길 먼 장애인 고용정책
29	이슈분석 2	시민사회운동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35	서평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
37	Cinema	1%의 우정 -〈언터처블〉

“장애인정보모니터링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요즘들어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는 질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하고 고민할수록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고민을 반복할수록 모니터링 활동은 감시와 관찰의 수행과 함께 법의 입법취지, 제도의 정책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이행의 과정에서 발견되는(또는 도입 당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는 되었습니다.

즉, 단순 비판과 감시의 활동에 집중하는 일차적 모니터링에서 나아가 법과 제도, 정책의 도입 당시 가졌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이행되고 있는지, 나아가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단체 활동의 상당 부분이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장애인관련 법과 제도, 예산을 확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법/제도, 정책의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일 못지 않게 법과 제도, 정책의 이행에 따른 영향 평가와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일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드는 일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모두가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 이것이 보다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과 분업, 긴장과 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확신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우리의 힘을 집중하려 합니다.

2013년 7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이석구

안락사 논란, 그 불편한 진실과 또 하나의 시선¹⁾

글 양원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모쿠슈라

“모쿠슈라는.....나의 사랑, 나의 혈육이라는 뜻이란다(Mo cuishle.....means my darling, my blood).”

31살의 늦깎이 복서 지망생 매기(힐러리 스웁스 분)는 노장 권투 트레이너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 분)를 만나 매 시합마다 승승장구한다. 저체중아로 태어나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가족들로 인해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매기와 딸과의 소원해진 관계로 허름한 체육관에 자신을 가둔 채 사는 프랭키는 서로에게 부녀와 같은 애뜻한 정을 쌓아간다. 관중들은 프랭키가 선물한 가운데 새겨진 “모쿠슈라(Mo cuishle)”를 연호하고, 마침내 매기는 타이틀매치의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칙으로 부상을 당한 매기는 전신이 마비된 채 인공 호흡기에 의존해 목숨을 이어가는 신세가 된다. 최고의 순간에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매기의 부탁으로 프랭키는 매기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다. 매기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프랭키는 자신이 선물한 매기의 또 다른 이름 “모쿠슈라”의 뜻을 매기의 귀에 낮게 속삭인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자기 손으로 떠나보내곤 프랭키도 어디론가 쓸쓸히 사라진다.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영화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2004년 작 <밀리언달러 베이비 (Million Dollar Baby, 2004)>는 2005년 아카데미에서 최우수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최고의 영화라는 찬사를 받는다. 사랑이 실종된 가족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대안적 우정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영화는, 마지막 순간 어디론가 떠나는 프랭키

1) 서울복지재단 웹진 [천만다행](2013.6)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의 쓸쓸한 뒷모습을 통해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해 질문한다. 하지만, 전신마비의 장애를 갖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적지 않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이 영화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인간의 조건과 생명의 의미, 생존의 가치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장애가 인간 상태(Human condition)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하다. “모쿠슈라” 라는 단어가 단지 ‘슬프도록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락사 논쟁

2009년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의 산소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대법원의 소위 ‘김할머니 사건’ 판결은 국내에서도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1975년 뉴저지주의 21세 여성에 대한 호흡기 제거를 허락했던 미국 최초의 합법적 안락사 판결을 연상시킨다(정작 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희생자 카렌 앤 퀴린(Karen Ann Quinlan)은 9년을, 김할머니는 201일을 더 살았다).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18대 국회에서 소위 존엄사 관련법이 발의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자기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발표하면서 안락사 논쟁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들을 통칭한다. 여기에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포함된다. ‘존엄사’는 본래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을 수 있게 돕는 것을 의미하나 요즘에는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고안(초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취지 하에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와 대상 의료 그리고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요지는, 의학적으로 임종기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고, 이때 환자의 의사는 명시적 의사, 의사 추정, 대리 결정의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영양 공급 중

단 등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소극적 안락사’의 합법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지난 2009년 의료계와 법조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안과 대동소이하다.

안락사 논쟁은 많은 의료적·법적·윤리적 쟁점을 제기한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환자의 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과도한 연명치료비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을 걱정하는 환자의 진의 왜곡가능성, 절차에 있어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의 정당성, 무연고자 등 적법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남용가능성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편한 진실과 또 하나의 시선

당사자의 선택권, 결정권을 중시하는 장애계의 흐름 속에서 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또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가족과 의사의 ‘모쿠슈라적’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도 않다. 그럼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의 일부에 장애를 가지고(어쩌면 죽음과 삶의 공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제기되는 안락사 논란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락사 논란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것은 의사집단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의료재정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경제논리와 함께 가족의 부담·의료법인의 경영논리와 의사의 본분 사이에서 연명치료 적용을 고민해야 하는 의료진의 부담회피 요청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여기서, 소외계층을 위한 필수요리를 명목으로 또 다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이미 충분인가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의 수혜자에게 타인의 복지를 빼앗는다고 비난할 때, 그 복지를 권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신조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의사들이 이미 보편화된 ‘안락사(euthanasia)’나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대신 굳이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안락사의 ‘생명 침해 행위’로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 결정이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닌 치료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이해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무의미한 경우는 오직 그 생명 자체가 무의미할 때뿐이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무의미한 생명'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퀴린의 생명은, 2011년 동안 이어진 김할머니의 생명은 과연 무의미한가?

2010년 미국의 한 케이블 TV에서 방송된 "You Don't Know Jack?"이란 드라마는 죽음의 의사(Dr. Death)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잭 케보키언은 1990년대 자신이 만든 자살기계로 약 130여명의 장애인과 불치병 환자를 안락사시켰고, 자신의 행위를 '자비'로 표현했다.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알 파치노는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시상식장에서 잭 케보키언을 소개하며 '당신이 한 일은 모두 옳았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무의미한 생명'이란 무엇인지, 과연 누가 생명의 가치를 판단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지 못한 채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생명의 가치가 장애나 건강상태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비인도적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호흡기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들에게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현상은 단지 우려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잭 케보키언의 등장을 기다리는 알 파치노일지 모른다.

실화를 기초로 한 영화 <잠수종과 나비(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2007)>에서 왼쪽 눈을 제외한 전신이 마비된 '장 도미니크 보비'가 언어치료사의 도움으로 눈 깜박임을 통해 처음 완성한 문장은 '나는 죽고 싶다'였다. 하지만 그는 '잠수종'에 갇힌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15개월 동안 20여만 번에 달하는 눈 깜박임으로 130쪽의 책 '잠수종과 나비'를 완성한다. 육체는 '잠수종'에 갇혀 있지만 기억과 상상력만으로 '자유로운 나비'를 꿈꾸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중증장애인과 불치병 환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들이 '나는 죽고 싶다'를 외치든 '나비'가 되기를 꿈꾸든, 스스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가지는 생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안락사 논쟁이 전문지식과 사회적 힘을 가진 사람들만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게 걱정스러운 이유이다. 다시 시작된 안락사 논쟁의 끝에서,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나비를 꿈꾸는 '장 도미니크 보비'를 허락할 것인가.(끝)

이 사람
의 향기

인터뷰

시민모두가 인권정책의 햇살 아래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김의수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구종원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는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를 필두로 작년에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소수자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셈이다. 이후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조례 규정에 따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또 서울시 인권위는 작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조치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 인권정책의 산실, 서울혁신기획관을 방문해 구종원 인권담당관을 만났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홈페이지의 인권사업 메뉴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메뉴 찾기가 힘든데요(웃음) 기획·감사·교육·정보화·마을공동체라는 로고가 왼쪽 상단 위에 나와 있고(<http://gov.seoul.go.kr/archives/25848>) 그 아래 일반행정 산하에 '인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 메뉴 구성으로 보면 인권과 일반행정(소통봉사, 사회혁신, 총무행정, 기획조정)이 한 범주에 속해 있는데요. 아직 사업 초기단계라 인권담당관실 메뉴 구성이 세분화되지 않은 듯 합니다. 언제쯤 리뉴얼하시나요?(웃음)

사실 찾기 힘든 곳에 있는데, 잘 찾으셨네요. ∴; 일단 리뉴얼 시기는 7월초구요. 지금 운영 중인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소개와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교육 등의 추진사항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또한 7월 중에 페이스북을 오픈하여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오픈 되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Q 작년 9월 10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의결됨에 따라(28일 공포), 서울시에 인권정책 전담부서인 인권센터(인권담당관)를 신설하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 시사주간지는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시스템 등 관련 주제의 기사를 게재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 인권센터의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외형적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담당관은 작년 9.28일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공포와 동시에 인권담당관(인권센터)이 신설되었으며 조직구성으로는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3명, 3개팀(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권담당관(인권센터)의 예산은 총 809,964천원으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등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Q 인권센터 직무 수행 인력 중 대중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들은 역시 '시민인권보호관' 일 것입니다. 이분들의 신분, 그리고 업무권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특히 인권침해와 관련된 조사권 부여 범위가 가장 쟁점이 될 듯 합니다만.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경험이나 활동경력이 풍부한 외부 인권전문가 중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분들입니다. 금년 '13.1.2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범위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시 투자 출연기관이나 시의 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도 넓은 의미로는 서울시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는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나 제도개선 권고를 하며, 권고를 통지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 민간인 중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을 채용하여 일정 범위의 조사권과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자체에 P&A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좁게는 장애인권리옹호에만 국한해 볼 때도 이 제도를 지자체에서 염두에 둔다는 점이 매우 신선합니다.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소수자 권리옹호제도는 어떠한지 그 비전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안들이 주로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되어 왔는데, 이제는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조사되어 시정 조치되는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수자 권리보호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인권보호관이 구체적인 차별이나 침해 사건의 조사를 통한 권리 옹호에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권리옹호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계에서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인 P&A와 같은, 중앙과 지방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권침해에 대한 개별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 도입에 관심을 갖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많은 개선과 옹호의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고민인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애인계에서 다양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시 인권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인권보호관을 6개월가량 운영해 본 상황에서,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소수자 권리옹호제도의

비전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Q 인권센터에 접수된 첫 인권침해 사례가 작년 말 '강남구청 텃밭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 인권센터 업무 개시 이후 처음 접수된 진정이 사회빈곤층의 생존권 문제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양극화'가 우리 사회 특성을 상징하는 상투어가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인권센터에 거는 기대는 이 사건의 처리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번 진정과 관련해 서울시의 고민은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작성 공청회 개최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이 사건이 생소할 수도 있는 전국 독자분들을 위하여 먼저 텃밭공동체 사건을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그 안에 담긴 인권 침해 요소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텃밭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강남구 소재 영동5교 교량 하부 300여평의 점유지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자활을 하던 극빈층 텃밭공동체 회원들의 작업장 겸 거주지를, 강남구가 교각의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남구청의 텃밭공동체 행정대집행 조치에 항의하여 강남구청을 방문한 한 시민단체"

출처 : 텃밭공동체 인권유린 관련 강남구청 항의방문,
http://landliberty.org/xe/?mid=board3&search_keyword=%EA%B3%B5%EB%8F%99%E C%B2%B4&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44226

강남구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대체 부지로 강남구 세곡동 소재 70여 평의 하천부지를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인 일부 텃밭공동체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여명은 자활 작업장이 없는 등 공간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가 텃밭공동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계속 강행하자, 이를 피해 2012. 10. 28. 서울시 소유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무단 점유하였습니다.

강남구는 탄천운동장 점유자들이 기존 텃밭공동체 세력이 아닌 사이비 텃밭공동체여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을 통해 컨테이너에 사람들을 감금하거나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새벽 잠든 시간에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타박상을 입히는 등 여러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 인권센터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임시거처 마련 등 대책을 강남구에 시정 권고한 사건입니다.

Q 아, 그렇군요 사건 개요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은 어떤 내용을 담고자 했는지, 공청회 내용과 더불어 그 이후 진행된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충분한 협상기회 제공 및 사전고지, 인권침해 예방교육, 사회적 약자 배려, 시기와 시점 규제, 주거 및 생계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공청회 및 이후 논의 과정에서 주로 논의 된 것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거주자에 대한 퇴거가 완료된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매뉴얼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인권센터의 권고조치

출처: MBN뉴스, 2012.12.30.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81934

Q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련의 인권사업은 시로서도 최초의 경험이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과 번영을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필연이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더욱더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최초로 도입되는 시책이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느끼는 생소함과 혼란은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권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적 관점의 확립 등 내부 교육도 동시 진행 과제라 생각되는데요, 더욱이 서울시 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확대 추진하실 걸로 압니다. 인권교육이 교육수행 그 자체를 실적으로 하는 형식적 진행이 되지 않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원칙들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권사업 추진시 나타난 시행착오 중에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인권사업을 고민하는 타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은 서울시 전 행정의 영역에 인권적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대상 인원수도 많고 교육과정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인권교육 첫해임을 감안하여 인권일반이나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할 계획이고 교육대상도 해당업무가 인권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중점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중점분야는 약 30~40명 소규모로 사례와 토론위주의 인권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각종 복지시설 등의 현장 종사자 교육시 인권 전문 강사를 지원하여 시설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Q 장애인 인권교육과 관련한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두배인 6%까지 공무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법적인 기준을 상향 확립하는 강한 정책 의지를 보였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보이는데요, 몇 년 전, 어느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한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인사시즌이 되면,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급자들이 장애인들은 복지쪽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 예단하여 복지과 위주로 보직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도는 복지과에 근무할 수도 있지만, 관심 분야는 누구나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반드시 복지과 위주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호소였습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는 주로 시민과 시산하 기관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권침해 사건일 수 있겠으나, 시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료 사회에서 인사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니까요. 때문에 시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장애인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구성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 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인권교육은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에 의거 장애인복지정책과 총괄부서로 매년 각 부서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권담당관과 공동으로 교육을 추진하되 중복적인 내용을 최소화하고, 해당 교육분야에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되도록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Q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공청회(2013년 3월 13일)가 개최되기 한달 전(2월 15일) 서울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 인권 조례(제7조,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절차인데요, 통상 만들긴 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너무 많이 본 까닭에 그날 행사는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 수립의 진척 정도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2.15일 공청회 이후 서너 차례의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사업부서장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권정책 기본계획 사업은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로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7월쯤에는 언론에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셨는데요, 의견 수렴 이전에 기대했던 바와 의견 수렴 후 예상 밖의 결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장애인 분야의 탈시설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은「장애인복지관 및 II센터(자립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탈시설 로드맵 구축」,「발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확대」,「시설 인권피해자 임시 주거지 마련」,「시설의 공익이사제 적극 시행」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에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처음 제시했을 때 솔직히 그때의 사고로는 동의 하기 힘든 부

분이 많았습니다만, 인권단체의 설명과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지원 받는 정책보다는 궁극적으로 일반인들과 사회속에서 같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됐고 관련 사업부서에 탈시설 정책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Q 예, 말씀 듣고 보니 역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떤 사업에서나 중요하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의 5대 원칙 중에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장애인 단체다 보니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장애인 탈시설 정책 부분에 '시설 인권피해자 임시 주거지 마련'이라는 획기적 조치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그간 장애계에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어느 공공기관도 제안을 수용하지 않다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일단 큰 박수와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내 인권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권리보장은 바로 이 임시 주거지 제공(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임시 주거지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으로는 단기대책으로 여성피해자 뿐아니라 남성피해자에게도 임시주거지를 마련해주고 장기대책으로는 2015년에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거주시설에서 인권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 전문적 치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Q 2천 년 전 중국의 맹자도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 홀로 사는 노인을 국가가 우선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청소년의 권리도 사회적 약자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성소수자 인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 사상이 강하여 어르신을 위한 인권·복지 정책에 거부감은 없는 듯 한데, 아직까지 청소년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냉담한 편입니다. 작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의 진통을 봐도 그렇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설명이 필요 없는 지경입니다.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해선 학교도 부모도 경우에 따라선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소수자를 위한 정책개입은 어려운 난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이나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서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Q 끝으로 현재 서울시는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영업제한, 소규모중소상인 지원 등 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시정권고가 사건 발생 후 조치라고 한다면, 앞서 서민 지원책들은 서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침해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까닭에 업무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서민지원 정책도 인권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사유하면 인권이념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추진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의 이념, 한마디로 말해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공직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인권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인권철학을 여쭙고 싶습니다(웃음).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님께서 “인권을 햇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권정책이 사회 곳곳에 햇살처럼 내리쬐어 시민모두가 인권정책의 햇살아래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인권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인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바라며 동시에 인권정책에 지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모니터링하여(우리 기관이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입니다. 웃음) 바람직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장애인 통합보호시설 확충 시급



□□□□□

김금분 의원 (강원도의회, 새누리당)
2012년 07월 11일 221회 사회문화위원회 3차회의 발언 중

김금분 위원 관심도 많으시고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6개소가 있고, 제가 작년 10월인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 국장 한명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성장애인 쉼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것이 국비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쉼터만 하면, 실제로 저희가 수요조사도 더 해 봐야 하겠지만 쉼터로 했을 때 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들로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것이 이용이 덜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단기보호소, 소개소 그런 부분까지 담당을 하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해서 쉼터든 아니면 단기보호소 쪽이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 위원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 국장 한명희 예.

김금분 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 국장 한명희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금분 위원 일반 여성들이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쉼터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더 장애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쉼터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국비 지원 이전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했어야 했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관심을 가진 단체라든가 접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처럼 어떤 건물을 구입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조그마한 공간을 전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게 시작하면 장애여성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시급한 여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진척이 더디게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료원이라든가 당면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미처 못 챙기시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 국장 한명희 제가 여러 경로로 만나 뵈기도 하고 의견을 듣고 안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 위원 금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이유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성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전국의 여성장애인은 2007년 약 821천명, 2009년 1,004천명, 2011년 1,05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여성장애인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장애인 피해율은 35.4%, 평생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장애인 피해율은 20.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이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었을 시 상담과 회복을 돕는 보호시설 확충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장애인 보호시설은 총 6곳 뿐이다. 2012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한 곳까지 합해도 8곳에 불과하다. 이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는 피해자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다. 더군다나 강원도의 경우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김금분 의원의 발언은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과 여성장애인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이대로 문제 없는가?

이강철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웹접근성 기준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 미디어분야에서 장애계 초미의 관심사는 접근성 준수일 것이다. 특히 웹 접근성은 2008년 시행된 장차법에 따라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고 민간 홈페이지는 2015년 4월까지 의무사항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시행과 발맞춰 행안부는 2011년 9월 22일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이하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선지 오래고(2011년 7월 통신업계 발표자료),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는 약 3,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가 넘는 등 인터넷 이용 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고려해 개발된 것이 아니어서 모바일 플랫폼 상의 정보소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장애인의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 사항을 마련해 지침으로 제시한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침은 크게 준수사항 7가지와 권고사항 8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기준조항들은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준수사항	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	(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3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4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6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8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고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침으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 기준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말이다. 하지만 지침 개발 과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과연 그러한지 의문점이 남는다.

정부는 2011년 2월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개요’ (2012.3.29)에 따르면 지침 제작 작업반 구성은 “성

관관대의 이성일 교수(위원장)를 비롯하여 국내 제조사,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및 단체 등의 전문가”로 나열돼 있다. ‘단체’는 당연히 장애인 단체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지침 적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인데, 정작 장애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아래 정부와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평가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작업반 구성에서 작업반 위원장이 선두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참여 주체의 비중에 따라 순서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개발자와 제조사의 입장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웹 접근성, 앱 접근성은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 이외에 다른 유형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나아가 지침이 7개월 만에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도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기조에 따라 진행된 일정이었는지도 궁금하다.

위에서 밝혔듯, 이 지침의 신뢰성 여부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의 평가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촉발되었다. 지침이 나온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웹접근성 관련 실태조사 대상에 모바일앱접근성을 포함시켰다. 2012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앱들의 평균점수는 73.4점, 지자체 앱들은 70.0점, 공사·공단 앱들의 평균은 69.0점, 민간분야는 64.5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조사한 『2012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51.3점으로 나와 정부 실태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물론 지침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테지만, 사용자가 느끼는 평가와 개발자 입장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지침의 신뢰성과 평가 방법을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지침을 준수한다고 앱 실제 이용자들이 얼마나 흡족할까라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지침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지침 준수가 용이한가라는 개발자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게다가 연구의 조사 대상자도 개발자들이다. 전자정보 접근성 연구에 깔린 개발자 주도의 시각은 웹접근성 시절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지금도 웹 및 앱 접근성 관련 홈페이지¹⁾에는 개발자들이 접근성 환경을 원활하게 구축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자들도 쉽게 접근성 환경을 모색하는 방법을 주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이루

1) <http://www.wah.or.kr/> 웹접근성 연구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그 점을 고치기 위해 개발자들이 노력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해진 접근성 항목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13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침에 따라 평가해보고, 지침 준수가 장애인의 앱 접근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침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조사해보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앱접근성 환경은 무엇인지 그 기초 청사진도 그려보고자 한다.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결과’²⁾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마트폰 이용 기기 중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를 이용하고 싶어서’(66.2%)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기능별 이용 비중을 묻는 질문에서는 무선인터넷 및 모바일 앱이 4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위는 음성/영상통화로 34.7%였다. 전화 본연의 기능보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지 오래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지침 조항 외에 불편한 점은 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누적될수록 더욱 나은 모바일 접근성 환경이 될 것이다.

2)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74834>,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01.29

갈길 먼 장애인 고용정책

이병원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노동은 생계수단임과 동시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노동을 할 수 없다면 결론 불안한 생계유지와 더불어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UN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노동을 권리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받아들인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로 노동을 말한다.

[표1] 우리나라 주요 장애인 고용정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2.3%(' 10), 2.5%(' 12), 2.7%(' 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Photo]

우리들의 발자취



2013.05.07.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모니터링단원 실무교육



2013.04 ~ 2013.06
지하철 이동편의
모니터링사업 환승경로 조사



2013.05.15. ~ 2013.05.16.
모니터링센터 비전 공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양평 워크샵



2013.06.24.
도봉구 장애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공동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이와 같이 UN의 설명은 노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에 대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자유시장의 경쟁안에서 노동의 권리에 소외되어왔던 계층의 삶을 보호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들의 노동권리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표1과 같은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을 알선하고 이후 장애인이 취업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민간사업자는 상시 근로자의 1천분의 25(2014년 이후 상시 근로자의 1천분의 27) 과 같이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52만여 명으로 전체인구대비 약 5%에 달하고 있다.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은 60.0%였으며 장애인고용률은 36.0%였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로 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0.3%의 절반수준이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7.8%로 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실업률 3.3%의 두 배 이상 차지하고 있다. 1년 사이 장애인들의 고용현실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고용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45.4%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그 절반인 22.7%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5년 28.4%에 비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만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관중에서는 100~299인 사업장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표2]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장애인고용 현황

구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공기업	21	86,035	2,297	2.91
준정부기관	79	79,323	2,309	3.33
기타공공기관	160	128,887	2,169	1.86
100인미만	11,433	801,977	15,859	2.34
100~299인	8,431	1,378,450	30,878	2.6
300인이상	2,752	3,007,877	51,501	1.97

출처 : 고용노동부(2010)

장애정도에 따른 고용률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3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경증에 비해 1/2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업률은 1/3이상 높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더욱 우대하고자 하는 조항이지만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표3] 장애정도에 따른 고용률 및 실업률

구분	계	
	고용률	실업률
경증	50.61	8.98
	26.76	14.76
중증	40.93	10.59

출처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0)

장애인들은 어렵사리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최저임금법의 벽에 가로막힌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장애인만을 특정하여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장애인을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업무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있어서 차별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2008년)에 따르면 조사대

상 OECD 21개국 중 장애인을 최저임금제에서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으로 3개국에 불과하다. 이 중 6개국은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국은 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할당제나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은 고용의 수치를 높이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적 접근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주차단속도우미, 사서보조원, 우편물 분류원 등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고용할당제도는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장애인고용할당제의 재원은 크게 장애인고용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어들게 되는 반면 사업체에 보전해야 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늘어나게 되는 모순적 구조이다. 그렇다하여 사업체의 부담금을 늘릴 수만은 없기에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운동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들어서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청소년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기관과 계약하기도 했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고, 처우 개선을 고민하던 대리운전 기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에서 올 4월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총 647건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 평균 6.5건 꼴이다. 그리고 이 중 481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되었다고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향후 5년간 8천개~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만~5만 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협동조합에 열광하는 것은 왜일까? 첫 번째는 양극화와 서민 경제의 붕괴다. 대기업에 밀려 생존 위기에 내몰린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과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접은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말이다.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혼자는 어렵지만 여럿이 뭉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협동조합에서 발견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다. 얼마 전만 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곳은 농림수산식품부 한 곳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하에 협동조합정책과·협동조합운영과·협동조합협력과 등 3개 과가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와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협동조합에 주목하면서 생긴 변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협동조합이 영리기업보다 위기에 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에도 뛰어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개념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과연 협동조합이란 무엇이며, 시민사회운동 측면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

는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다만, 그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1844년에 설립된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은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성공적인 모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 약 16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도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의 농무성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말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란 의미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하다. 15년간의 긴 토론을 거쳐 1995년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따르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국 농무성의 정의와 달리 협동조합의 주체, 목적, 조직성격, 소유 및 운영방법, 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라면 이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조직과의 비교

좀 더 명확한 협동조합의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투자자(주주) 소유가 아니라 사업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 기업이다. 주식회사가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다. 셋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배당보다는 이용배당을 우선한다. 출자배당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에서의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출자배당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이용배당은 없고, 출자배당만 있는데 이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소유제도	소유자	조합원	주주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지분거래 가능
	가치변동	출자자격 변동 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 변동
통제제도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의결권	1인 1표(다수의 평등한 지배)	1주 1표(소수의 대주주 지배)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처분제도	내부유보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협동조합의 배당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없음
	출자배당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 제한 없음

위의 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필요만 있다면 큰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도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리기업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생산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데 있어 원가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보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때로는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협동조합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협동조합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구분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사단법인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추구
운영방식	1주1표	1자1표	1인1표					
설립방식	신고					신고 (영리)	신고 (비영리)	인가
책임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유한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소규모+대규모		소규모	
성격	물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 결합		
기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다른 조직형태와의 비교도 참고하면 협동조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개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하 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써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특수형태의 협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중시하는 일반적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을 더욱 우선시 한다.

협동조합은 정의로운 사업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쉽게 설명할 때 '두 사람이 불만 없이 케이크를 나누는 방법'에 비유를 많이 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정확하게 케이크의 중간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물리학이나 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밀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닭 잡으려 소 잡는 칼을 드는 격'이다. 특히, 케이크에 장식이 있거나 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식의 차원에서 두 사람이 불만 없이 케이크를 나누려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진 사람이 먼저 케이크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려고 노력할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먼저 선택함으로써 선택에 따른 불만이 없다. 불만 없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은 몹시 피곤하다. 하나의 케이크를 두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 규칙을 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라면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케이크를 나누면 되고, 주식이 적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모두가 동등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착실하게 이용하는 정의로운 사업체'라

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

시민사회운동은 과시즘적 통치 질서의 균열에 따라 억압적 사회관계가 재편되면서 사회운동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등장하는데, 현실 사회주의 붕괴를 교훈으로 대안적 이념을 도출하면서 환경, 여성, 인권 등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권력이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이다. 환경 지키기 운동, 권리 찾기 운동, 사법감시활동, 소비자운동 등이 구체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시민사회운동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이며, 인권과 연대를 중요시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런 측면에서 협동조합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이런 정의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체성 선언에서는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를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로 하며,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합원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며 윤리적 가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평등, 공정, 연대의 정신에 따라 운영될 때 비로소 조합원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진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적이고 정직한 사업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맺으며

미시시피 강 유역에는 '블랙풋'이라는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다. 이 부족들 사이에서는 매년 '선댄스'라는 축제가 열린다. 재미있는 건 이 행사는 부족의 리더 격인 사람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부족 전체에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열린다는 점이다. 이렇게 땀 한 톨 남김없이 나눠줘 빈털털이가 되지만 그들은 걱정이 없다. 나눔을 통해 얻은 부족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기술력과 지혜로 언제든 다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운 사람은 부족민들에게서 사회적 권위와 권력이라는 득을 보고 부족민들은 그들의 기술과 고된 노동, 그리고 후한 인심으로 필요한 물건이라는 득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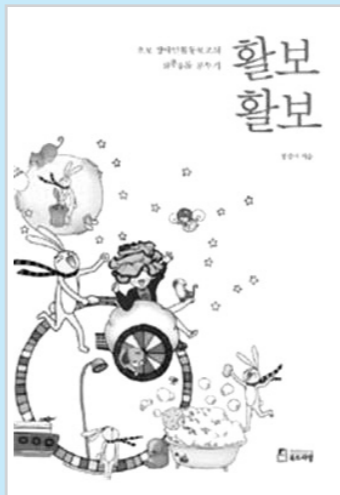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

— 『활보활보』를 읽고 —

글 윤성희 모니터링단원

이것이 시너지다. '어떤 제도가 시너지를 갖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추구하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한 행동이 뜻하지 않게 그 자신에게도 이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애브라함 매슬로우는 이야기 했다. 결국 개인(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자동적으로 조직 이외의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현대사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형태가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조합원)만 잘 먹고 잘살고 사회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조합 이기주의를 걱정한다. 협동조합이 본질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일견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1980년 세계협동조합연맹(ICA)에서 발표된 레이들로 보고서 7대원칙으로 강제된 민주적인 운영원칙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으로 조합 이기주의는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개인(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사회적 과제해결)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추동하는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담고 있다. 혹자는 협동조합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설립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시작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경험과 기술은 갖췄지만, 현재의 양육강식 시스템 안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소박한 이기심을 인정해줘야 한다. 협동조합의 집약체인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이 이탈리아 국가 전체 평균 개인소득보다 훨씬 높지만 그렇다고 협동조합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평균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전체 사회의 생활문제들이 개선되는 시너지 효과는 가능하다. 가난한 조합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곧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 불평등 해소가 곧 전체적으로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진보시키는 것이다. 물론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고 싶다. 협동조합에 대한 옥석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은 협동조합에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나 시민사회 및 진보진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지원제도가 협동조합의 취지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까지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이 어찌면 혁신적인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고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아무쪼록 대표적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에게도 협동조합의 바람이 몰아치길 기대한다.



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학회장을 하면서 장애인학생을 활동보조한 경험이 있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도 연을 맺게 됐다. 자치법규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실의 장애인 차별 못지않게 조례의 차별 조항들을 많이 발견했다. 조례의 왜곡된 시선에 새삼 놀랍기도 했다.

일단 책을 소개받았을 때 장애인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자신의 체험을, 그것도 출판물로 선보이는 것이 신선했다. 아마 처음이 아닐까. 장애인의 목소리는 미약하나마 조금씩 이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그래도 아직 갈 길은 요원하다), 그 옆에 있는 활동보조인

들의 사회적 존재감이랄까, 당사자로서 사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시도가 최근 결성된 활동보조인노조 빼고는 개별적으로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활동보조인을 자기 변화의 계기로 성찰하는 저자의 태도는 인상적이다.

정경미(이 책의 저자):저는 이 일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거든요. 제가 몸이 굉장히 건강한테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다 쓰지 않은 힘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랬었는데, 일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또 이 일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신체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안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활보일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호흡을 맞춰서 움직이는 몸으로, 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몸이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p.201-202).

책은 저자가 3명의 여성장애인을 활보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 그리고 본인의 감상으로 빼

곡하다. 그리고 그중 한명인 '제이'와의 인터뷰 그리고 셀프인터뷰로 자기 느낌을 집약한다. 저자는 장애인 활보에서 체험한 소소한 경험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는다. 실제로 그녀의 삶은 그 이전보다 건강해진다. 그 아름다운 관계 맺기의 정점을 짚어 내거나 시시콜콜 상술하는 것은 책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스포일러일 수 있기에 생략한다. 일단 사서 읽어 보시라.(사실은 지면 제한 때문에)

그런데 저자가 활동보조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한정해서 접근했다면 이런 글을 세상에 선보일 수는 없었을 것 같다. 한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는 대개 저학력 중년여성 중심의 비정규직 노동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저자는 대학원 석사까지 마친 나름(?) 고급인력이다(사회일반의 시각으로 볼 때). 게다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진보적 학술단체에서 공부하는 자기 철학을 갖춘 지식인이다. 때문에 전국의 활동보조인들 중에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출판하겠다고 의욕을 보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학력을 포함한 저자의 삶의 이력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걸 이 책의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일 수 있다. 저자와 같은 교육수준과 경력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활동보조인으로 더 많이 종사하시기 때문이다. 이 책은 좀 배운 분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사람이 활동보조인이라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주변부 노동자로 일하면서 느낀 '특별한' 경험담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괄호 속에 잠시 넣어두고 당장 이 책을 사 보시라).

최근 복지부가 주관하는 활동지원제도 관련 회의에서 장애인단체들이 활동보조인노조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타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비단 저자처럼 비범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치부해야 할까?

도서명	활보활보
저자	정경미
출판사	북드라마, 2013년 04월12일

1%의 우정 '언터처블'

— 영화 <언터처블> —

글 서지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간사



처음 이 영화를 접하게 된 것은 TV광고를 통해서였다. 당시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담당자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 영화를 봤다. 영화는 지극히 상충하는 두 사람 간의 우정을 담고 있는데 보는 내내 유쾌하고 많은 교훈을 줬다.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진 상위 1%의 '필립',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반항적이지만 자유분방한 하위 1%의 '드리스'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둘의 첫 만남은 필립의 활동보조인을 뽑는 면접장에서 시작된다. 필립은 단지 사회보조금을 받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드리스에게 '2주간 문제없이 자신을 돌보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겠다'는 흥미로운 내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시작된 둘의 동거는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드리스의 등장으로 필립은 그 동안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 '장애인 탑승'이라고 써 있는 장애인 차량이 아닌 스포츠카를 타고, 몸에 안 좋을까 피지 않던 담배도 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 편지를 통해서만 했던 사랑도 드리스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연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드리스는 필립으로 인해 근사한 방과 육조, VIP석에서의 연극 관람, 심지어 전시회도 가보고 천부적인 자신의 그림 실력도 발견하게 된다.

약속했던 시간이 되고 필립은 드리스를 떠나보낸다. 필립은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지만 드리스 같은 활동보조인을 만날 수 없어 점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드리스 또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필립을 계속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만난 둘은 둘도 없는 1%의 친구

가 된다.

영화를 본 후 '선입견', '고정관념' 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 TV에서 장애인이 나오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는 표현을 하고 길을 가다 장애인을 만나면 원치 않는 도움을 주려고 하기도 한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고용주와 고용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둘은 멋진 1%의 우정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떠나 누구나 추구하는 본질적인 욕구는 같다. 장애로 인해 포기해야만 했던 지극히 근본적인 욕구를 드리는 정말 멋지게 해결해주었다. 장애인도 사랑하고 싶고, 공부 하고 싶고, 문화생활도 하고 싶다. 이러한 본질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을 만난 필립은 정말 행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다.

'내 처지를 생각하면 그의 출신, 배경 따위 뭐가 중요하겠나,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

요즘은 이쁘다, 못생겼다, 돈이 많다, 없다 같은 쓸데없는 사회적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평가받을 때가 많다. 사회뿐 아니라 친구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이 기준이 적용 된다. 이 영화는 장애인의 삶과 고층, 활동보조인의 역할뿐 아니라 요즘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시각의 문제점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1%의 우정이 부럽고 너무 아름답다.

영화정보	언터처블 : 1%의 우정
감독	올리비에르 나카체, 에릭 토레다노
출연	프랑수아 클루제, 오마 사이



인터넷에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날개를 달자 !!

생명체와 같이 변화가는 정보(웹)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주된 장애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표준 및 접근성 진단 · 컨설팅 전문그룹이며,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컨설팅분야 최초 사회적기업

● ● ● 웹 표준 · 웹 접근성 진단컨설팅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용성 진단평가로 장애인 당사자 사용편의성 점검

● ● ● 웹 모니터링 서비스(Web Monitoring Service)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개선 사업 이후 웹 접근성 품질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 ● 웹 접근성(WA) 인증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 및 장애인 사용성 진단 평가 실시



T. (02)2678-0078
E-mail. webwatch@hanmail.net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이권희)	T.02.2252.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3층
부산 (대표:김호상)	T.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14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김 량)	T.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61-2 1층
대전 (대표:안승서)	T.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번지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성현정)	T.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49-7 새한빌딩 5층
경기 (대표:안미선)	T.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박광순)	T.041.579.2752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전북 (대표:김미아)	T.063.229.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47-1
경남 (대표:문숙헌)	T.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3층 303호
제주 (대표:고현수)	T.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12-22 1층